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채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634

발의연월일: 2022. 9. 29.

발 의 자:이채익・유경준・김미애

김용판 • 박성민 • 강기윤

한무경・최영희・이 용

윤상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.

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, 제도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으며, 기부 행위를 통해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형편과 미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음.

이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'고향사랑의 날'을 국가기념 일로 제정함으로써,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할 수 있게 하고자 함. 아울러,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의 날을 전후하여 적극적으로 고향 사랑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음으로써, 인구감소 및 재정악화 의 어려움에 처한 지방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어 국가균형발전에 기 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고향사랑의 날 지정·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·운영한다.

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조의2(고향사랑의 날 지정・
	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
	향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국
	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고
	향사랑의 날을 지정·운영한다.
	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・운영
	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	로 정한다.